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김산업에 김종자 배양·생산 추가,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8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포함	4
2.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원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4. 6. 26.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전 세계 김 생산 및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 1위 국가로서 최근 10년간 김 산업은 연평균 8%씩 고속성장해왔음. 지난해 대한민국의 김 산업 해외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면서 ‘K-먹거리’산업을 주도하고,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바다의 K-반도체’라는 별명도 얻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가공·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김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김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하여 민간 차원의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외에 국가 차원의 김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기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으며, 향후 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김 종자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김 품종의 개발은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는 김 외에도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수산종자육성연구소 또한 김 외에 다른 육종 연구가 더 주를 이루고 있어 1조원이 넘는 수출실적을 낸 김 산업에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육성은 매우 미흡한 상황임.

한편, 김산업법 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목포지역에 수출 클러스터 및 해남 등지에 수산식품 거점 단지를 각각 조성 중인 상황에서 김 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신설에 대해 수출 클러스터 등 조성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출한바, 현재 목포 수출 클러스터가 2025년 준공 예정이고, 해남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가 2022년 준공된 상황으로 여건이 조성되었음. 따라서 김 산업 진흥 및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관 설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었다고 할 것임.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김 생산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 부진 등으로 한국의 김 생산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온난화와 수온 상승에 대비하여 고온과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김 종자의 연구개발 유인이 더욱 증가한 상황임.

특히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토지 오염 감소 및 온실가스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김 산업의 미래를 위한 ‘광온성 김’ 및 육상 재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국립 김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포함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유통·수출·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김산업”이란 김 종자의 배양· <u>생산과</u> -----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김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산물수출품 중 약 26%(2023년 기준)를 차지하여 여러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김 수출액이 2011년 1억 6,100만 달러에서 2023년 7억 9,3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김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판매를 아우르는 김산업 역시 지난 10년간 연평균 14.2%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수산업에서 김과 김산업이 지니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수산물수출품 중 김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김수출액 (A)	1.61	2.31	2.52	2.74	3.05	3.53	5.13	5.26	5.79	6.00	6.92	6.48	7.93
수산물수출액 (B)	23.1	23.6	21.5	20.7	19.2	21.3	23.3	23.8	25.1	23.1	28.3	31.5	30.0
비율(A/B)	7.0	9.8	11.7	13.3	15.8	16.6	22.0	22.1	23.1	26.0	24.5	20.6	26.4

*자료: 해양수산부

개정안은 이러한 김 생산의 기초가 되는 김 종자의 생산·배양에 관한 사항을 김산업의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김 종자의 생산·배양을 동법에 따른 산업진흥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김 종자는 ‘물김 생산→마른김 생산→조미김등 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김의 양식·생산·가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해 김 양식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수온내성·내병성 특성을 지닌 김 종자의 개발 및 김종자 생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김 종자의 개발은 2010년 슈퍼김 개발 이후 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고, 김종자 생산업 허가도 2023년 기준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 3,119건 중 14.3%인 449건으로 나타남.

[수산종자·김종자 생산업 허가현황]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현황											
○ 허가현황 : 3,119건 / 생산면적 : 4,057ha / 생산품종 : 125종											
* 육상종자(1,933건, 363ha), 해상종자(1,186건, 3,694ha)											
육상종자	구분	합계	전복	어류	김	우렁쟁이	넙치	굴	미역	한다리새우	그 외
허가현황	건수	1,933	674	593	154	122	145	54	37	4	150
해상종자	구분	합계	새고막		굴	피조개		김	우렁쟁이		그 외
허가현황	건수	1,186	430		191	88		295	70		112

김종자 생산업 허가현황	
○ 허가현황 : 449건(육상 김종자 154건, 해상 김종자 295건)	
*전남 399건(육상수조 139, 밧줄 260), 충남 45건(육상수조 10, 말복 35), 경남 2건, 부산·충북·전북 각 1건	

* 자료: 해양수산부

□ 현재 김 종자를 포함한 수산식물종자 및 수산동물종자 등 수산종자에 대해서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의 연구·보존·생산·유통 및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지원 등이 규정되고 있고, 「양식산업발전법」에서도 “양식”의 개념에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¹⁾하고 있어 김종자를 포함한 수산종자에 대한 산업육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기술개발·해외시장진출·재정 및 금융지원이나 진흥센터·기술연구단지의 지정·조성, 수산종자의 개량 및 생산·유통관리 등의 다양한 법적근거²⁾가 마련되어 있어,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짐.

다만, 개정안은 김 종자 생산업의 진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김 및 김산업 육성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현행법이 김·김가공품 및 김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김 종자의 배양·생산에 관한 사항 등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발의된 취지로 이해됨.

2) 구체적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10조(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5조(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6조(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및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유통 관리 등을 참고할 수 있음.

2.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김 및 김산업과 관련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 김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과 정부의 예산 출연·보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① 김 및 김산업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개발을 통한 김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 김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산업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김의 양식·생산·가공기술 연구·개발 사업

3.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개발·평가

4. 김용 약제개발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개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10조에서 김산업 진흥을 위해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소에 김육종연구실³⁾을 두어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동 연구소는 김 외에도 매생이, 다시마·미역 등 갈조류·패류 육종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고, 주로 김의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김의 가공기술, 김 양식장 환경관리, 위생안전 등 분야 연구 등 김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김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기술개발, 사업화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 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김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흥원의 명칭을 “국립 김산업진흥원”으로 하고, 설립형태를 해수부를 감독기관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 과거 제21대 국회에서 김산업 진흥·육성을 위해 과학기

3) 김육종연구실(연구사 5명)에서 신품종 육종 및 보급 기능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

연구실 명	인원	담당업무
김육종연구실	연구사 5명	* 김 품종개발 및 산업화 * 김 국유품종 보급 및 사후관리 * 김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로 김산업연구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개정안⁴⁾이 발의된바 있는데, 당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 정부부처로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의 개정 필요성,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영역과의 중복소지 등이 지적된 적이 있었음.

이번 개정안의 경우 기관 명칭을 김산업연구소 대신 김산업진흥원으로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공법상 재단법인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에 따른 「과기출연기관법」의 개정 필요성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는 진흥원이 김산업과 관련된 기술 연구·개발, 정책조사·지원 등 다수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 안 제10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진흥원은 ‘김산업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김의 양식·생산·가공기술 연구·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개발·평가, 김용 약제개발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개발,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15967호)」

이 경우 ① 현재 진흥원 외에도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으로 앞서 언급한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소, 전라남도 해양수산물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등이 있는 점, ② 각 기관에서 김을 포함한 해조류 양식기술 연구, 품종개발 및 산업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김 품질 표준 확립, 김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⁵⁾,

진흥원과 해당 기관들 간 업무중복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 조정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김산업 관련 주요 연구기관 현황】

구분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소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설립형태	○ 해수부 소속기관	○ (민간) 재단법인
조직 현황	○ 정원 10명/현원 9명 * <u>김연구실 5명</u>	○ 현원 19명 *전문연구인력 11명(박사5명, 석사6명) * <u>김 전문인력: 6명</u>
주요 사업 및 기능	○ 해조류 양식기술 연구 ○ 해조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 해조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연구 ○ 기후변화대응 해조류 생산성 향상 및 산업적 이용 확대방안 연구	○ 수산물식품산업 육성 -김품질 표준 확립 및 고도화 -AI기반 김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실증 -전남 김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등

5) 다만, 전남도는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의 경우 전체 수산물식품에 대한 시험·검사와 입주기업 지원 역할 수행에 국한되어 있고 김성분·데이터 분석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김산업 종합 전담기관인 진흥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음

	※24년 연구과제 - 김우량품종 개발 및 산업화 연구 - 녹조류 매생이의 지속가능한 양식기술개발 - 김 황백화 발생원인 및 피해 저감 연구	○ 식품품질·안전관리체계 구축 ○ 해양수산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
비 고	○ 김 관련 주요 연구성과 - 김 국유품종 품종보호권출원 및 보급 → 김 수출증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지정('07.3., 해수부1호) ○ <u>김산업 전문기관</u> 지정('22.12., 해수부1호)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구성

□ 그 밖에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정부부처(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 우선, 해양수산부의 경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고, 다만 진흥원의 명칭을 국립 김산업진흥원에서 한국 김산업진흥원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섬 발전 촉진법」⁶⁾ 등 유사입법례에서 정부지원 재단법인

6)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

에 대해서는 주로 ‘국립’ 대신 ‘한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및
김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김 개별품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
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임.

-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김산업 진흥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및 지역별 김산업진흥구역, 공공 주도의 연구개발
기관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들과 유사·중복의 우
려가 있고,

새로운 기관 설립은 기존 사업과 예산의 분산·중복 투자 등의 재
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정 수산물 산업 진흥을 위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형평
성 문제로 인해 다른 수산물에 대한 연구기관 설립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참고 1

김 양식 및 생산 구조

□ 김 양식(물김 생산)

- ▶ **종자생산(육상 실내 배양)** : ① 사상체 배양(1월~3월) → ② 사상체 패각 이식(3월 중순~4월) → ③ 패각사상체 배양 및 성숙도 확인(4월~9월)
- ▶ **양식생산(해상 양식)** : ④ 채묘(9월 중순~하순) → ⑤ 김 양식 및 채취(11월 ~ 익년 5월)



구분	종묘생산 단계별 주요 내용
① 사상체 배양	▶ 굴패각에 이식할 사상체를 배양시키는 단계
② 사상체 패각 이식	▶ 사상체를 잘게 잘라(300~700 μ m) 굴패각에 살포하여 이식하는 단계
③ 패각사상체 배양 및 성숙도 확인	▶ 패각에 이식된 사상체를 채묘에 사용하기 위해 생장 및 성숙도를 관리하는 단계로 평면식과 수하식이 있음 * (평면식) 해상 채묘 시 사용, (수하식) 육상 채묘 시 사용
④ 채묘 준비	▶ 사상체에서 방출된 김 포자를 김발에 부착시키는 단계 * (해상채묘) 성숙된 패각사상체를 여러겹 겹쳐진 김발에 올리고 비닐봉투를 씌워 바다에서 포자가 김발에 부착하게 하는 방식 (육생채묘) 성숙된 패각사상체가 담긴 수조 위에 물레를 돌리면서 김발에 포자를 김발에 부착하게 하는 방식
⑤ 김 양식 및 채취	▶ 포자가 부착된 김발을 바다에서 양식한 후 채취(물김) * (지주식) 수심이 낮은 해역(5m), (부류식)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 사용

참고 2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소 현황

* 위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615

□ 해조류연구소 주요 기능

- 해조류 양식기술 연구
- 해조류 신제품 개발 및 산업화
- 해조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연구
- 기후변화대응 해조류 생산성 향상 및 산업적 이용 확대방안 연구

□ 정원

구분	계	연구직			일반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정원	10	7	2	6	2
현원	9	6	2	5 (1명 충원예정)	2

* 기관장 1, 연구총괄 연구관1, 김연구 4, 그 외 해조류 3, 행정 1, 청사 및 시설관리 1

□ 2024년 수산물과학시험 연구 과제별 예산

구분	과 제 명	예산 (백만원)	연구기간
	계	1,290	
경상 (3)	김 우량품종 개발 및 산업화 연구	340	'21~'25
	녹조류 매생이의 지속가능한 양식기술개발	200	'22~'25
	김 황백화 발생원인 및 피해저감 연구	750	'24~'26

□ 주요 연구성과

- 김 국유품종 품종보호권출원 및 보급 → 김 수출증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 미역 국유품종 품종보호권출원 및 보급 → 생산성 증대
- 다시마 국유품종 품종보호권출원, 용다시마종자 분양 → 양식 저변 확대
- 해조류 양식품종별 양식매뉴얼 발간 → 양식 품종 다양화

									
2008 2009 2010 2015 2016 2018 2019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 양식매뉴얼 및 홍보자료 발간					한국의 해조류 품종보호권 등록품종				

□ 김 관련 연구조직 및 연구성과

○ 김 연구조직

- 김육종연구실(연구사 5명)에서 신품종 육종 및 보급 기능 일부 수행

실명	인원	담당업무
김육종연구실	연구사 1	김 품종개발 및 산업화 김 국유품종 보급 및 사후관리 김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연구사 2	
	연구사 3	
	연구사 4	
	연구사 5	

* 김 질병연구, 김 양식장 환경관리, 위생안전 분야 연구자 부재로 인력 확충 필요

○ 김 관련 연구성과

- 김 품종개발 현황

구분	합계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비고
출원	19	15	3	1	출원 32개 품종 중 58% 점유
등록	14	13	1	-	등록 26개 품종 중 54% 점유

종명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육종법	선발			돌연변이	선발								돌연변이	선발				
종명	수과원 104호	수과원 105호	수과원 106호	전수 1호	수과원 108호	수과원 109호	수과원 110호	전수 2호	수과원 111호	수과원 112호	수과원 114호	수과원 115호	수과원 116호	수과원 117호	수과원 118호	수과원 401호	수과원 402호	수과원 501호
형태																		
특징	속성장	고품질	속성장	항산화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출원	2013	2014	2015	2015	2016	2017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19	2021	2022
등록	2015	2017	2019	2017	2018	2019	2019	2021	2022	2022	2022	2023	2024 (예정)	2023	2024 (예정)	2021	2024 (예정)	2025 (예정)

- 김 국유품종 보급 현황

연도	대상품종	보급량(g)	실시수량(상자)	실시료(원)	계약(건)	점유율(%)
'17년	4품종	595g	59,500	3,570	21	2.0
'18년	7품종	3,200g	320,000	20,802	93	12.2
'19년	9품종	5,250g	525,000	50,376	120	20.4
'20년	12품종	10,748g	1,397,240	128,430	176	33.8
'21년	14품종	5,510g	964,250	80,965	110	18.4
'22년	16품종	5,345g	762,475	64,792	104	19.3
'23년	9품종	5,670g	831,250	79,222	119	18.9
'24년	9품종	6,442g	951,650	87,622	137	21.5

참고 3

(재)목포수산물지원센터 현황

* 위치 : 목포시 고하대로719번길 52

□ 센터 개요

- 설립목적 : 수산자원의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 수산업 육성 및 가치 창출
- 면적 : 부지 14,775.7m², 건축 연면적 9,737m²
 - 연구동 : 3층 3,816m², 연구장비 120종 290대
 - 생산동 : 지하1층~지상2층 5,921m², 생산장비 51종 66대 · 생산시설 18종
- 장비구축 : 연구장비 119종 287대, 생산장비 51종 66대, 생산시설 18종

□ 센터 연혁

- '07. 03. :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지정(해수부 1호)
- '15. 06. : 센터 개소
- '17. 03. : 지역특화(주력)사업 육성기업 지원사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 '18. 05. : 창업보육센터 지정(중소벤처기업부)
- '20. 05. : 식품(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 지정(식약처)
- '22. 12.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해수부 제1호, 김제품 연구·개발 분야)

□ 조직 현황

- 현원 19명[1센터장, 5개팀(실용화사업, 분석인증, 연구기술지원, 행정지원, 김산업전문T/F)]
- 전문 연구인력 : 11명(박사 5명, 석사 6명)
 - * 김산업 전문 연구 인력 : 6명(2명 충원 예정)

□ 수산물산업 육성

- 김 품질 표준 확립 및 고도화(김산업 전문기관)
 - 김의 생산·가공 전주기 표준화 시스템 구축 및 김 표준화 설정
 - 김 위해요소(중금속, 유해미생물) 분석 및 저감화 기술 개발
- AI 기반 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사업기간 : 2024. 6. ~ 2026. 12.(31개월)
- 사업내용 : 김 데이터와 AI를 융합하여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AI 솔루션 개발 · 실증 및 현장 적용
- 목포어묵 육성
 - 공장규모 : 부지 5,610㎡, 연면적 2,828㎡(공장동 2,423㎡, 사무동 405㎡)
 - 사업내용 : 국산원료를 활용한 연육 및 반제품 생산·공급, 위생시스템 지원 등으로 어묵생산 품질 표준화
- 전남 김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 50,000천원

□ 식품 품질·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144호)
 - 시험·검사 항목 : 식품(이화학, 미생물)
 - 주요내용 : 자가품질위탁검사 및 참고용검사(9대 영양성분 등)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 인정분야 : 식품(화학시험) 및 미생물(생물학적시험)
 - 인정현황 : 전국 700개사(시험검사 분야) 중 광주전남 총 4개소(광주 3, 전남 1)
 - 분야별 인정현황 : 식품 50개 기관, 미생물 79개 기관
 - 추진현황 : 품질문서 구축, 법정 교육 이수 완료
 - 향후 계획 : '24. 6. ~ '24. 10. 인정신청 및 인정 완료

□ 해양수산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

- 전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 수산기업 발굴 및 육성, 수산창업 및 수출 지원 등
- 스마트+해양수산 청년 창업지원사업
 - 해양수산 및 전후방산업 분야 청년창업자 사업화지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제품제조 공정개발, 위탁가공 생산 지원